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20일, 장동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1. 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13)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1.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동혁 의원)

국내적으로 아동학대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동찬)

-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 명령을 병과할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로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변경·취소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국민 일반의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법상 검사가 친권상실 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는 범죄가 아동학대 중상해범죄 또는 상습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았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아동학대범죄의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 신고의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성과 다른 교육 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을 병과할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및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변경·취소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